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7751(본소), 2017나7768(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등 · 부당이득금 반환(반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7751(본소), 2017나7768(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82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C

변론 종결 2018. 1. 26.

판결 선고 2018. 2. 22.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820(본소),
2017가단4464(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6. 5. 18. 접수 제631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르372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 관한 2016. 4. 6.자 조정조서에 기한 재산분할금채무 139,0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9,882,8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8,606,9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의 주위적 청구로서 B에 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재산세 대납액 1,462,879원 및 대출 금원 편취액 28,420,000원, 합계 29,882,879원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중 재산세 대납액 1,275,920원에 대하여만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반소의 재산세 대납액 중 186,959원(= 1,462,879원 - 1,275,920원) 및 대출금원 편취액 28,42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 6.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르372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16. 4. 6.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위 조정조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는 2016. 5. 30.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피고는 2016.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2007. 2. 8. 접수 제3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과거 및 향후 관리비, 세금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는 즉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원고는 2016. 5. 30.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삼성생명보험[무]슈퍼홈닥터보험(계약일 1998. 12. 11.), 신바람건강생활보험(2종)(계약일 1998. 12. 11.), 무)삼성종신보험(계약일 2001. 11. 2.))(이하 위 각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의 수익자를 D1)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 나. 피고는 2016. 5.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6.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 다. 피고는 2016. 11. 30.경 및 2016. 12. 28.경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

1,275,920원(= 2013년 1기분 170,780원 + 2013년 2기분 170,780원 + 2014년 1기분 179,770원 + 2014년 2기분 179,770원 + 2015년 1기분 188,580원 + 2015년 2기분 188,580원 + 2016년 2기분 197,66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D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재산세 대납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과거 및 향후 관리비,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1,462,879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재산세 1,462,87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과거 및 향후 관리비, 세금 등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6. 11. 30.경 및 2016. 12. 28.경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 1,275,92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재산세 합계 1,275,9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위 1,275,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6,959원(= 1,462,879원 - 1,275,920원)을 추가로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6년 1기분 재산세로 197,660원이 부과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1. 위 재산세 197,6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출 금원 편취 부분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D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28,420,000원을 편취하였거나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은 28,42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28,42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7. 6. 21.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34,268,836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로서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피고에서 D로 변경하도록 한 취지는 이 사건 보험의 수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D로 변경하기로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피고에서 D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내방 또는 동의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피고가 위와 같은 협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피고에서 D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세 대납액 상당의 부당이득 1,275,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24.부터 원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윤신

판사강지현

판사이승엽

별지

1) 원고와 피고의 아들이다.